

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 기획사업부 시행세칙

제 1장 목적 및 적용범위

제1조(목적)

이 시행세칙은 사단법인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(이하 '본 학회'라 함)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(제47조 시행세칙 및 각 규칙제정)에 의거 기획사업부의 기본 방침과 세부 시행사항들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사업부의 업무)

- 학회의 각종 대내외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, 학회 홈페이지 업무, 홍보 업무, 편집과 출판, 교육 업무를 관장한다.
- 기관단체, 사업체, 국내외의 대학 등과 융합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유치한다.
- 산하에 기획분과, 홍보분과, 출판분과, 교육분과를 두고, 각 1~2명의 부회장을 둔다.

제3조 (사업부의 구성 및 임기)

1.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등의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2. 수석부회장과 부회장, 운영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3. TF팀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4조 (사업 수행)

1. 사업부의 사업은 수석부회장의 책임 하에 수행하되 사무처와 협의하며, 사업시행 후 15일 이내에 업무보고서를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칙

1. 본 시행세칙은 2018년 2월 24일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
2.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정기총회 승인을 거쳐 시행한다.